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합3371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원고 일부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강

담당변호사 황재걸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일부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일부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일부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444,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일부승계참가인(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89,90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 피고와 문경시 D, E 지상에 F콘도 및 리조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5. 20.부터 2020. 12. 30.까지, 공사대금 77,8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2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내용)

2. 공사기간 : 2019. 1. 19. ~ 2021. 4. 19.

3. 본 공사는 코스트앤피(Cost-Fee-Contract) 방식으로 한다.

② 기성지급

가. 매월 30일 기준으로 기성청구하여 익월 15일 이내 기성지급한다.

나. 구성 : 매월 실투입된 순공사원가(Cost) + 피(Fee)로 구성한다.

다. 피(Fee) : 실투입된 공사원가(Cost) * 5%로 확정하여 원고에 지급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28. "원고는 2019. 1. 28. 구두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타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용한다. 공사를 중단하고 정산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2019. 2. 11. “2019. 1. 28.경 원고의 타절 통보를 수용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더 이상 계약 유지가 어려우므로 기지급한 275,000,000원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각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창원세무서장은 2020. 12. 9.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775,050,40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3371 공사대금 소송의 소송물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0차전11170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21. 3. 9. 2021타채904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 중 189,903,5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1.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G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3126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21. 4. 16. 2021타채1443호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6,062,55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가 2019. 2. 11.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 중이던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피고의 위 해지는 부적법하고, 오히려 이는 피고의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기성금 채권 423,500,000원,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806,944,120원 합계 1,230,444,120원의 채권 가지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200,000,000원을 H 주식회사에, 500,000,000원을 I 주식회사에 채권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 1,230,444,120원에서 채권양도 된 700,000,000원을 뺀 530,444,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 2014다67195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제1의 기초사실 마, 바,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청구금액 775,050,400원인 압류(체납처분), 각 청구금액 189,903,500원, 206,062,55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청구금액의 합산액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530,444,1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채권(미지급 기성금 채권 423,500,000원,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 806,944,120원 합계 1,230,444,120원에서 채권양도 된 700,000,000원을 뺀 530,444,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89,90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기성금 청구에 관한 판단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그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8.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27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 원고의 기성 공사금액이 기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성고 비율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정산청구서(갑 제5호증)를 기초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9. 1. 28. 및 2019. 2.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 을 제2, 3,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계약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계약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8. 8.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27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 하도급업체인 J에게 하도급대금 39,9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2019. 10. 1. 그 중 24,53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하도급업체인 K에게 하도급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그 중 3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피고에게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정, 판사 백상빈, 판사 박강민